

『easy-one 외화송금서비스』 이용약관

제 1 조(목적)

이 약관은 (주)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『easy-one 외화송금서비스』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.

제 2 조 (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)

- ①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 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 1.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: 1일 누계 미화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,
다만, 건당 미화5천불 상당액 이하는 연간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
 2. 해외체재자/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송금: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
 3. 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: 등록된 한도 내에서 1일 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
다만 , 한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
 4. 국내이체: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
- ② 이용자가 은행의 자동화기기 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제 1항의 송금거래를 하는 경우 이 서비스 송금한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.

제 3 조 (송금전용계좌)

-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은행에 송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.
- ② 송금전용계좌는 원화보통예금 및 외화보통예금에 한하며 원화보통예금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.
- ③ 송금전용계좌는 이용자가 지정한 용도로 외화송금을 하기 위한 자금의 입출금거래와 송금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의 송금대금 반환을 위한 출금거래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④ 송금전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화로 송금됩니다. 다만, 송금이 처리되기 전에 이용자가 은행에서 정한 사고신고 절차에 따라 송금철회를 요청한 경우 은행은 송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.
- ⑤ 송금이 처리되지 아니하여 잔액이 있거나 지급정지 또는 입금정지 된 송금전용계좌에는 송금을 위한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, 은행 영업일 18:00부터 다음 영업일 08:50까지는 송금전용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로

입금할 수 있습니다.

- 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당 100,000원미만, 외화송금전용계좌에는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의 금액 및 외화현찰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출국만기보험금의 경우 해당 입금액이 50,000원이상인 경우에는 입금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(서비스 이용,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

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.

제 5 조 (송금정보 등록)

이용자는 송금용도, 송금통화 및 수취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등록된 송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.

제 6 조 (송금의 처리기준)

- ① 이용자가 송금전용계좌에 송금대금을 입금하면 입금시간에 따라 은행은 아래와 같이 송금을 처리합니다. 다만,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(미갱신 포함), 송금한도 초과, 유학생 해외체재자 입증서류 미제출, 송금전용계좌 지급정지 및 기타의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송금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송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

입금 시간	송금 처리
은행 영업일 08:50~18:00	입금 즉시 송금처리 (다만, 08:50~09:00 입금은 당일 09시 이후 송금처리)
은행 영업일 18:00~24:00, 토·일요일/공휴일	다음 영업일 09시 이후 송금처리 (다음 영업일 08:50 최종 잔액으로 송금)
은행 영업일 00:00~08:50	당일 09시 이후 송금처리 (당일 08:50 최종 잔액으로 송금)

-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송금요건이 미비되어 송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요건 보완 후 재송금 하거나 송금대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(송금외화금액)

이용자가 송금전용계좌에 입금한 원화금액에서 송금일자에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차감한 잔액이 송금되며 송금외화금액의 보조단위 미만은 절상됩니다.

제 8 조 (적용환율)

서비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시점에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됩니다.

제 9 조 (송금지시의 취소·변경)
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행한 송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 10 조 (송금처리결과 통지)

이용자가 송금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수단(매체)을 등록한 경우 은행은 당해 수단(매체)을 통하여 송금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제 11 조 (대외은행 수수료)

결제은행 등 대외은행의 수수료를 송금인 부담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 (부가서비스)

- 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이용자가 환율우대 없이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을 해외로 보수송금하는 경우 송금전용계좌 해지시까지 은행이 정한 외국인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
- ② 보험가입시 제휴보험회사 앞으로 개인식별정보(고객명, 실명번호, 성별)와 송금거래 정보가 제공 됩니다.

제 13 조 (책임)

- ① 은행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 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
- ② 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

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
- ③ 은행은 제 6조 제 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송금요건의 미비 등 은행의 귀책 없는 사유로 송금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 14 조 (준용 규정)

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“외환거래 기본약관”, “예금거래 기본약관”,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”, “외국환거래법규”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..

제 15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6조를 적용(준용) 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약관-091 (2023.06.30)